

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
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3. 10.

농림축산식품부
친환경농업과

1. 개정이유

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은 농약 불검출을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어, 바람에 의한 흩날림 등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미량의 농약 검출도 허용하지 않아,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,

공시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개선(안 별표 4, 별표 14)

1)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출 기준을 ‘불검출’에서 일반농산물 잔류허용기준(MRL)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하고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.01mg/kg 이하로 조정

2) 인증사업자에게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인증기준에 추가

나.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등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(안 별표 20)

- 공시사업자등의 행정처분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유기농업자재를 대상으로 하고, 위반사항이 부적합 원료·재료에서 발생한 경우는 부적합 원료·재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조정

다. 서식 변경(안 별지 제35호, 별지 제42호, 별지 제45호서식)

-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사항을 알아보기 쉽고 작성에 편리하도록 서식 수정(별지 제35호), 수시로 변경가능한 사항들을 지정서 서식에서 삭제(안 별지 제35호, 제42호, 제45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없음

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2호에 가목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에 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라목2) 중 “검출되지 않을”을 “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이어야 하고, 같은 고시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0.01mg/kg 이하일”로 한다.

4) 토양비옥도의 유지, 생물다양성의 증진, 천적서식지의 제공, 자연의 순환 등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·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할 것

5) 인근 관행농업 포장으로부터의 농약 비산, 관개나 배수 등 농업용수 또는 기타 농업자재 등으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

별표 14 제2호에 가목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에 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라목3) 중 “검출되지 않을”을 “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이어야 하고, 같은 고시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0.01mg/kg 이하일”로 한다.

4) 토양비옥도의 유지, 생물다양성의 증진, 천적서식지의 제공, 자연의 순환 등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·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할 것

4) 인근 관행농업 포장으로부터의 농약 비산, 관개나 배수 등 농업용수 또는 기타 농업자재 등으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

별표 20 제1호라목 본문 중 “같은 날 생산된 같은 명칭의 유기농업자재”를 “유기농업자재”로 하고, 같은 목 단서 중 “그”를 “부적합”으로 한다. 별지 제35호서식,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[별표 4] 유기식품등의 생산, 제조·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(제11조제1항 관련) 2.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의 인증기준		[별표 4] 유기식품등의 생산, 제조·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(제11조제1항 관련) 2.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의 인증기준		
심사 사항	인증기준	심사 사항	인증기준	
가. 일반	1) ~ 3) (생 략) <u><신 설></u>	가. 일반	1) ~ 3) (현행과 같음) 4) <u>토양비옥도의 유지, 생물다양성의 증진, 천적서식지의 제공, 자원의 순환 등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·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할 것</u>	
나. 재배 포장, 재배용수, 종자	1) ~ 4) (생 략) <u><신 설></u>	나. 재배 포장, 재배용수, 종자	1) ~ 4) (현행과 같음) 5) <u>인근 관행농업 포장으로부터의 농약 비산, 관개나 배수 등 농업용수 또는 기타 농업자재 등으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</u>	
다. 재배 방법	1) ~ 4) (생 략)	다. 재배 방법	1) ~ 4) (현행과 같음)	
라.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	1) (생 략) 2)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며, 합성농약 성분은 <u>검출되지 않을 것</u>	라.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	1) (현행과 같음) 2)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며, 합성농약 성분은 『식품위생법』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이어야 하고, 같은 고시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0.01mg/kg 이하일 것	
	3) ~ 5) (생 략)		3) ~ 5) (현행과 같음)	

[별표 14] 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, 제조·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(제54조제1항 관련)

2.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

심사 사항	인증기준
가. 일반	1) ~ 3) (생 략) <u><신 설></u>
나. 재배 포장, 재배용수, 종자	1) ~ 3) (생 략) <u><신 설></u>
다. 재배 방법	1) ~ 4) (생 략)
라.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	1) ~ 2) (생 략) 3)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며, 합성농약 성분은 <u>검출되지 않을 것</u> 4) ~ 6) (생 략)

[별표 14] 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, 제조·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(제54조제1항 관련)

2.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

심사 사항	인증기준
가. 일반	1) ~ 3) (현행과 같음) 4) <u>토양비옥도의 유지, 생물다양성의 증진, 천적서식지의 제공, 자원의 순환 등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·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할 것</u>
나. 재배 포장, 재배용수, 종자	1) ~ 3) (현행과 같음) 4) <u>인근 관행농업 포장으로부터의 농약 비산, 관개나 배수 등 농업용수 또는 기타 농업자재 등으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</u>
다. 재배 방법	1) ~ 4) (현행과 같음)
라.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	1) ~ 2) (현행과 같음) 3)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며, 합성농약 성분은 『식품위생법』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이어야 하고, 같은 고시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<u>0.01mg/kg 이하일 것</u> 4) ~ 6) (현행과 같음)

[별표20]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(제70조, 제73조, 제82조 및 제8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~다. (생략)

라. 공시사업자등에 대한 공시취소, 판매금지, 시정조치 명령, 유기농업자재의 회수·폐기 및 공시의 세부 표시사항 변경 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같은 날 생산된 같은 명칭의 유기농업자재를 처분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위반사항이 부적합 원료·재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료·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모든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처분대상으로 한다.

[별지 제35호서식]

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5호서식] (앞쪽)

공시번호: 제 호

유기농업자재 공시서

1. 업체명:
2. 대표자 성명:
3. 사업장 소재지:
4. 자재의 명칭:
5. 자재의 구분:
6. 상표명:
7. 주성분(원료)의 종류 및 함량(%):
8. 유효기간:
9. 제조장 주소 또는 수입원산지(국가, 제조사):
10. 최초 공시일:
11. 최초 공시기관: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2항 및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[별표20]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(제70조, 제73조, 제82조 및 제8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~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공시사업자등에 대한 공시취소, 판매금지, 시정조치 명령, 유기농업자재의 회수·폐기 및 공시의 세부 표시사항 변경 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유기농업자재를 처분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위반사항이 부적합 원료·재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원료·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모든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처분대상으로 한다.

[별지 제35호서식]

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5호서식] (앞쪽)

공시번호: 제 호

유기농업자재 공시서

1. 업체명:
2. 대표자 성명:
3. 사업장 소재지:
4. 자재의 명칭:
5. 자재의 구분:
6. 상표명:
7.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(%): .
8. 원료의 종류 및 투입비율(%):
9. 유효기간:
10. 제조장 주소 또는 수입원산지(국가, 제조사):
11. 최초 공시일:
12. 효능·효과: [] 표시제품, [] 미표시제품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2항 및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공시기관

직 인

210mm×297mm[백상지 150g/㎡]

(뒤쪽)

유기농업자재 공시 사항

○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

효 능 · 효 과	사용방법				비 료 등 록 사 항	원료·재 료 종류별 투입비 율	비 고
	적용 대상 (작물 명)	사용 시기	사용 량	처리방 법			

○ 병해충 관리

효 능 · 효 과	사용방법					농 약 등 록 사 항	원료·재 료 종류별 투입비 율	비 고
	적용 대상 (작물 명)	적 용 병해 충	사용 시기 (횟 수)	사용 량	처리방 법			

공시기관

직 인

210mm×297mm[백상지 150g/㎡]

(뒤쪽)

유기농업자재 공시 사항

○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

사용방법				비 료 등 록 사 항	원료·재 료 종류별 투입비 율
적용대상 (작물명)	사용시 기	사용 량	처리 방법		

효능·효과

(뒤쪽)

유기농업자재 공시 사항

○ 병해충 관리

사용방법					농 약 등 록 사 항	원료·재 료 종류 별 투입 비율
적용대상 (작물명)	적 용 병해 충	사용시 기 (횟수)	사용 량	처리 방법		

효능·효과

[별지 제42호서식]

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
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2호서식]

(앞쪽)

지정번호: 제 호

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:
2. 대표자 성명:
3. 소재지:
4. 지정분야:
5. 유효기간:
6. 최초 지정일: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 및 「농림축산
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
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9조제3항
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
로 지정합니다.

년

월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120g/m

(뒤쪽)

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

○ 시험연구의 지정분야별 인력

자재분야	이화학분석	미생물분석	식물분 석	잔류시 험	독성시험
인원수					

○ 시설

[별지 제42호서식]

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
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2호서식]

지정번호: 제 호

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:
2. 대표자 성명:
3. 주사무소 소재지:
4. 시험연구시설 소재지:
5. 지정분야:
6. 유효기간:
7. 최초 지정일: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 및 「농림축산
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
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9조제3항
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
로 지정합니다.

년

월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120g/m

<뒤쪽> 삭제

사무실	실험실	시료보관실	시험포장

○ 장비

장비명	모델명	규격	제조업체	비고

[별지 제45호서식]

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5호서식]

(앞쪽)

지정번호: 제 호

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:
2. 대표자 성명:
3. 소 재 지:
4. 공시 분야:
5. 유효기간:
6. 최초 지정일: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2항·제3항 및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6조제4항(제77조제3항)에 따라 위의 기관을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120g/㎡]

(뒤쪽)

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사항

○ 조직

부서명							
인원							

[별지 제45호서식]

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5호서식]

지정번호: 제 호

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:
2. 대표자 성명:
3. 소 재 지:
4. 공시 분야:
5. 유효기간:
6. 최초 지정일: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2항·제3항 및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6조제4항(제77조제3항)에 따라 위의 기관을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120g/㎡]

<뒤쪽> 삭제

○ 공시 분야별 인력

자재 분야	토양 개량·작물 생육	병해충 관리	비고
인원			

○ 시설

시설 종류					
규모(㎡)					

○ 장비

장비명	모델명	규격	제조업 체	비고